

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서 개정대비표

(구매기업용-협력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 및 장래채권 양도방식용)

1. 주요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서 (구매기업용-협력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 및 포괄 승낙방식용)</p> <p>주식회사 하나은행 앞</p> <p>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_____(이하 “구매기업”이라 합니다)은 상호협력하여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은행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결제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이 협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p> <p>제 1 조 (목적) (기재생략)</p> <p>제 2 조 (협력기업의 정의) 이 협약에서 협력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용역 포함, 이하 같습니다)을 납품하는 거래기업 중 은행으로부터 이 협약과 관련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담보조로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외상매출채권(이하 “외상매출채권”이라 함)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은행과 체결한 기업과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 없이 채권대금을 만기수령하기 위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서 (구매기업용-협력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 및 장래채권 양도방식용)</p> <p>(삭제)</p> <p>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_____(이하 “구매기업”이라 하고, “은행”과 합쳐 “양 당사자”라 합니다)은 상호협력하여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은행의 「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결제제도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이 협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과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규약」 및 「동시행세칙」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p> <p>제 1 조 (목적) (현행과 같음)</p> <p>제 2 조 (협력기업의 정의) 이 협약에서 협력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용역 포함, 이하 같습니다)을 납품하는 거래기업 중 은행으로부터 이 협약과 관련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담보조로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외상매출채권(이하 “외상매출채권”이라 함)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련 대출약정을 은행과 체결한 기업과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만기수령하기 위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p>	<p>용어 수정</p> <p>용어수정 및 준용 약관 추가</p> <p>문구 수정</p>

제 3 조 (업무의 방법)

- ① (기재생략)
- ② 협력기업은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 전에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without recourse)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전자외담대"라 합니다)을 받거나 하위 협력기업에 대한 구매자금 결제를 목적으로 상생벤더구매론의 지급승인(이하 상생벤더구매론의 개별대출이 실행된 경우 및 지급승인으로 은행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상생벤더구매론"이라 합니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없이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은행의 지급대행을 통하여 만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전자외담대 및 상생벤더구매론이 실행된 경우에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일에** 구매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당일만기대출을 실행하여 전자외담대 및 상생벤더구매론을 상환처리하고,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해당 금액으로 당일만기대출을 상환처리합니다.

제 4 조 (기본 협약사항)

- ① (기재생략)
- ②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은행은 협력기업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하도록 하거나, 협력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대해 구매기업은 제 4 항에 명시된 사유 등이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신설)

- ③ (장래채권이 매 건별로 확정되었을 경우의 통보)
1.~2. (기재생략)

제 3 조 (업무의 방법)

- ① (현행과 같음)
- ② 협력기업은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에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without recourse)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전자외담대"라 합니다)을 받거나 하위 협력기업에 대한 구매자금 결제를 목적으로 상생벤더구매론의 지급승인(이하 상생벤더구매론의 개별대출이 실행된 경우 및 지급승인으로 은행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상생벤더구매론"이라 합니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없이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은행의 지급대행을 통하여 만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전자외담대 및 상생벤더구매론이 실행된 경우에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구매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당일만기대출을 실행하여 전자외담대 및 상생벤더구매론을 상환처리하고,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해당 금액으로 당일만기대출을 상환처리합니다.

제 4 조 (기본 협약사항)

- ① (현행과 같음)
- ②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및 양도승낙)**
1. 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은행은 협력기업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하도록 하거나, 협력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대해 구매기업은 제 4 항에 명시된 사유 등이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2. 구매기업과 협력기업 사이에 체결한 물품 납품 계약 등에서 협력기업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구매기업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협력기업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은행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③ (장래채권이 매 건별로 확정되었을 경우의 통보)
1.~2. (현행과 같음)

용어 수정

용어 수정

용어 수정
호 번호 신설

법무법인 검토
의견 반영을 위
한 호 신설

<p>3.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은 발행일(통보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서 정하기로 합니다.</p> <p>④(기재생략)</p> <p>1.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이 당시까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p> <p>2.~3.(기재생략)</p> <p>4. 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가 있거나 협력기업이 제 3 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한 경우</p> <p>5.~6. (기재생략)</p> <p>⑤ (전자외담대의 취급 및 제한)</p> <p>은행은 제3항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협력기업별 통보금액 범위 내에서 협력기업에게 전자외담대를 취급할 수 있기로 합니다. 그러나 동 협력기업이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거나 기타 은행의 내규 상 여신의 비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전산 상 장애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즉시 그 사실을 구매기업과 협력기업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p> <p>⑥ (기재생략)</p> <p>⑦ (양도받은 채권의 관리 및 통지)</p> <p>구매기업은 은행이 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성실히 관리하여 은행의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금 채권보전에 적극 협조하고, 협력기업의 채권자가 위 외상매출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다거나 협력기업으로부터 제 3 자에게 위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기로 합니다.</p> <p>⑧ (외상매출채권의 지급)</p> <p>1. 구매기업은 제 3 항에 따라 은행에게 전산으로 통보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그 명세에 기재된 지급기일에 은행의 영업시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그 명세에 기재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하나은행에 개설한 본인명의로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p>	<p>3.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은 발행일(통보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서 정하기로 합니다.</p> <p>④ (현행과 같음)</p> <p>1. 협력기업이 당시까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p> <p>2.~3.(현행과 같음)</p> <p>4. 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가 있거나 협력기업이 제 3 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한 경우</p> <p>5.~6. (현행과 같음)</p> <p>⑤ (전자외담대의 취급 및 제한)</p> <p>은행은 제3항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협력기업별 통보금액 범위 내에서 협력기업에게 전자외담대를 취급할 수 있기로 합니다. 다만 동 협력기업이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거나 기타 은행의 내규 상 여신의 비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전산 상 장애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즉시 그 사실을 구매기업과 협력기업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양도받은 채권의 관리 및 통지)</p> <p>구매기업은 은행이 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성실히 관리하여 은행의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금 채권보전에 적극 협조하고, 협력기업의 채권자가 위 외상매출채권을 (가)압류하였거나 협력기업으로부터 제 3 자에게 위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기로 합니다.</p> <p>⑧ (외상매출채권의 지급)</p> <p>1. 구매기업이 이 협약에 따라 은행에게 통보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구매기업 및 협력기업 간의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의 변제 의무를 부담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며, 그 명세에 기재된 만기일에 은행의 영업시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그 명세에 기재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입금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주)하나은행에 개설한 본인명의로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p>	<p>용어 수정</p> <p>용어 삭제</p> <p>용어 수정</p> <p>용어 수정</p> <p>용어 수정</p> <p>법무법인 검토 의견 반영한 문구 수정</p>
--	--	--

예금주	예금주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2.	만기도래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은 별도의 청구서 없이 인출하여 전자외담대 및 상생벤더구매론 취급 분을 우선 변제하고, 미취급 분은 접수일자 순,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	
3.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예금자동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4.	지급기일에 구매기업이 제 1 호에서 약정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협력기업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 2 호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협력기업의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	
5.	협력기업의 전자외담대 신청 또는 상생벤더구매론 신청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입금받은 채권대금을 그 지급기일에 별도의 수수료를 공제함이 없이 제 2 호의 방법으로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	
6.	은행은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 없이 채권대금을 만기수령하기 위한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그 외상매출채권 처리에 관한 책임이 구매기업에게 있기로 하는 조건으로 제 2 호의 방법으로 지급대행업무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⑨ (외상매출채권의 취소 및 변경) 구매기업이 제3항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 명세를 전산으로 통보한 경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하자, 전산조작오류, 기타 사유를 이유로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산통보를 받고 그에 기초하여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전자외담대 또는 상생벤더구매론을 실행한 후에는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통보당시의 외상매출채권 명세에 따른 금액을 제8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		
⑩ (외상매출채권 지급채무의 범위)		

예금주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용어 수정
2.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예금자동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업무절차에 따른 문구 수정
3.	만기일이 도래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은 별도의 청구서 없이 출금하여 외상채권대출과 상생벤더구매론 취급 분을 우선 변제하고, 미취급 분은 접수일자 순,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		상동
4.	협력기업의 전자외담대 또는 상생벤더구매론 신청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입금 받은 채권대금을 그 만기일일에 별도의 수수료를 공제함이 없이 제 3 호의 방법으로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		상동
5.	만기일에 구매기업이 제 1 항에서 약정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협력기업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 3 항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		상동
6.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처리 중 결제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이 제 3 항에서 정한 결제순서에 해당하는 건 별 외상매출채권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며 결제계좌 잔액보다 금액이 적은 채권이 없을 경우에는 결제되지 않습니다.		상동
⑨ (외상매출채권의 취소 및 변경) 구매기업이 제3항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 명세를 전산으로 통보한 경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하자, 전산조작오류, 기타 사유를 이유로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다만 ,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산통보를 받고 그에 기초하여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전자외담대 또는 상생벤더구매론을 실행한 후에는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통보당시의 외상매출채권 명세에 따른 금액을 제8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			용어 수정
⑩ (외상매출채권 지급채무의 범위)			

제 3 항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외상매출채권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전자외담대 또는 상생벤더구매론을 실행한 이후에는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통지를 받거나, 협력기업으로부터 제 3 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거나, 세무서 또는 조세공과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 통지를 받는 등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은행에게 그 대금을 제 8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

⑪ (기재생략)

제 5 조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총 대출한도 및 지급의무)

① (기재생략)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금 원							
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	금 원							
이자율 등	<input type="checkbox"/> 고정금리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연()%						
	<input type="checkbox"/> 변동금리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 ()%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 기간별가산금리						
		1~1 5 일	16~4 5 일	46~7 5 일	76~10 5 일	106~ 195 일	196~ 285 일	286 일 이상
	() %	() %	() %	() %	() %	() %	() %	
지연배상금률	지연배상금률은 제 5 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 단, 최고지연배상금률은 연 %로 합니다.							
	연체가산율이 ()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연체가산율이 ()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연체가산율이 ()개월 초과인 경우 : 연 %							

제 3 항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외상매출채권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전자외담대 또는 상생벤더구매론을 실행한 이후에는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의 **(가)압류의** 통지를 받거나, 협력기업으로부터 제 3 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거나, 세무서 또는 조세공과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 통지를 받는 등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은행에게 그 대금을 제 8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

⑪ (현행과 같음)

제 5 조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총 대출한도 및 지급의무)

① (현행과 같음)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금 원	
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	금 원	
이자율 등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 가산금리()%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연()%	
지연배상금률	지연배상금률은 제 5 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연체가산율 ()%를 더하여 결정하며, 최고 연()%로 합니다.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 년을 365 일(윤년은 366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변 제 방 법	개별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용어 수정

용어 수정

이자율 적용 기준 반영

여신거래약정서 (기업용)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용어수정

